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91조 제4항 제1호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라 함)에 의거,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및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 되어있는 투자회사 등(의결권 행사를 당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이를 총칭하여 이하 “회사”라 함)의 의결권과 수탁자 책임 활동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경우 그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자산 및 일임자산(이하 통칭하여 “집합투자자산”이라 함)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⑤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회사는 회사의 투자 대상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투자대상 관련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점관리사안 등

②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비공개 대화 및 서한 발송
2. 의결권 행사
3. 중요 사안 등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4.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5. 소송 제기

③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권 행사 대상 및 주체

제5조(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는, 회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자산 및 의결권을 위임받은 일임투자자산에서 보유중인 주식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권의 행사 주체) ①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 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 또는 안건 분석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⑤ 리서치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리서치센터장은 회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고객과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 (fiduciary duty)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첨의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 관리한다.

제3장 의결권의 행사

제8조(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의결권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제9조(의결권의 행사) 의결권 행사 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법인이 정한 양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1영업일 전까지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인에 제출한다.

제10조(중립 투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회사와 영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영 제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당해 집합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영 제8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 되는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자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 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총 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③ 회사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자산에 속하는 각 계열 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은 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행사 금지) 회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조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서면 행사) 회사는 집합투자자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자산 간에 통일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하여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수탁자 책임 활동

제15조(주주 관여 등) 회사는 보유중인 종목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면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대화나 서한 발송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주주제안 등)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공개서한 발송 대상 기업이 일정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 개선이 없는 경우, 수탁자 책임 위원회의 결정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회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회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기록의 유지 및 공시

제18조(기록의 유지) ① 법 제87조 제7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각 집합투자자산에서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권행사 관련 사항의 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영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타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영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회사가 본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회사의 웹사이트에 최소 년 1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결권 행사 내용의 공개 시기) 의결권 행사 내용은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내부통제

제21조(내부통제) 위원회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부 칙(2018. 9. 30)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기) 기존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은 폐기한다.

부 칙(2020. 02. 21)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31)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본 기준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이하 “지침” 이라 함)” 에 따라 당사가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별적인 의안의 예를 들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탁자책임위원회

본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이사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자산 및 일임자산(이하 “집합투자자산 등” 이라 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사안별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은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장 주주총회

3.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요건

주주총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의 변경, 주주권 행사 요건의 변경, 의결 주체의 변경 등에 관하여,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4.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 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할 수 있다.
-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5.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6. 의결 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7.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정관의 변경

8. 회사명의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9. 회계연도의 변경

잡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10. 기타 정관의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의 안건은 중장기 회사가치 또는 주주 권리 침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결정한다

11.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12.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는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의결권의 행사

13.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4.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게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15. 비금융주력자 보유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지침 및 본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회사가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이사

16. 이사회 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①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 및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18. 이사의 선임

-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독립적인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경임으로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5.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6. 당해기업의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 침해에 현저한 책임이 있거나, 향후 이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
 7.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에 따른 회사의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해,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 ④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 ⑤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 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 ⑥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사외이사의 선임

- 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③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단, 합작투자 관계상, 주요주주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
 2. 당해기업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이었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3. 당해기업이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지분 거래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 또는 그런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4.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5.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기업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7년(금융업종은 6년)을 초과하는 자

6. 그 밖에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당해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자문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

④ 다음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1. 전문경영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20. 이사회 의장과 CEO 의 분리

-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 ③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21.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22. 이사 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 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서의 변경에 반대한다.

23.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제6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24.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 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18. 이사의 선임」 및 「19.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기준 19-③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1. 법령상 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 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 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감사 직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시 사업 특성 등에 대한 고려)
 3.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③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총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5.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제7장 보상

26. 임원 및 감사의 보수

-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반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반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7.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②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특히, 적자 또는 순이익 감소 기업의 인당 및 총 보수한도의 증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③ 다만, 개별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 ④ 보수한도, 내역 및 체계 등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28.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27.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29.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 ①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 ②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황금낙하산 계약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

30. 경영진에 대한 성과 보상

- ①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재무적 업적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고려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②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성과급 지급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③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31. 주식 연계 보상

- ① 경영 성과 제고,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특히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1.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 (발행 주식의 3% 이상)
 - 2. 희석률이 과도한 경우 (10% 이상 희석되는 경우)
 - 3. 주주 동의 없이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32.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3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임직원에게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 ④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제8장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34.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35.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 ① 회사의 적정 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 ② 다만, 당사를 비롯한 각 주주의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및 계획,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동종업계의 배당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 ③ 중장기 회사의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 또는 반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제9장 자본 구조

36. 주식의 발행

- ① 정관상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합리적인 경우에 찬성한다.
 - 1.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증자
 - 2. 경영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증자
 - 3. 기타 증가의 목적이 명확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규모,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

37. 종류 주식

- ①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 ②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정당한 M&A 를 부당하게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 ③ 회사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거나,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38. 자기 주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찬성한다.

39.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당사가 동의한 경우
4.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5.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40. 주식의 분할 및 병합

- ①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1. 주식연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회사 가치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발행 목적의 합리성, 발행 규모,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42.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 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43.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44.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 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5.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제10장 주주의 권리

46.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47. M&A, 영업 양수도, 회사의 분할 및 분할 합병

사안별로 검토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1. 인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대금 또는 비율 적정성
2. 절차 및 정보 공개의 적정성
3. 사업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4.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48. 영업양수도 등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49.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50. 적대적 인수 합병 및 위임장 대결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및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되, 종업원, 서플라이 체인상의 유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51. 합병 및 인수

-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52. 환경, 사회적 이슈

- ① 사안별로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되, 환경, 사회적 요소의 관리가 당해기업의 명성 뿐 아니라 중장기 기업의 운영, 관련 비용 등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 ② 환경,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법규, 규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관련 리스크의 방지, 제거 등을 위한 안건 또는 이에 대한 공시 강화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